

부산직할시 수도 급수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급수구역)

① 수도 급수구역은 부산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공익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급수 할 수 있다.

② 시외급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써 정한다.

제 2 조 (급수종류)

① 급수종류는 다음 3 종으로 한다.

1. 전용급수

1 호 또는 1 개소 전용에 소요되는 것

2. 공동급수

다수호의 공동 또는 특정용에 소요되는 것

3. 소화급수

소방용에 소용되는 것

② 급수종류는 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 3 조 (소화전의 관리)

소화용 급수는 소방용 연습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이를 봉함하여야 한다.

제 4 조 (급수의 청구)

①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수청구가 있더라도 수도사정에 따라 급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급수용구의 위치변경 개조 증설수선 철거 또는 급수의 중지 폐지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④ 양수기에서 분기된 급수관의 위치변경, 개조 증설, 수선 및 철거시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급수용구의 정의)

급수용구라 함은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과 양수기까지의 시설물 전부를 말한다.

제 6 조 (급수용구의 승계)

① 급수용구는 그 설비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용구의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하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상속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 7 조 (급수 사용자 및 종류 변경 신고)

① 급수용구 관리자 및 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급수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관계공무원)

관계공무원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건물구조 내에서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그 신분에 관한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 9 조 (급수제한)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수도공사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급수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급수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였을지라도 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0 조 (급수의 판매분여 금지)

급수는 공설공용 선박용 및 기타 시가 공설 또는 공인한 판매급수를 제외하고는 판매 또는 분여할 수 없다.

제 11 조 (급수용구 관리책임)

급수용구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가족, 고용인, 동거자, 기타 급수용구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고 인정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라는 이유로써 이 조례에 규정된 책임을 면 할 수 없다.

제 2 장 급수 공사

제 12 조 (급수공사의 정의)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용구의 신설, 증설, 변경 또는 수선을 말한다.

제 13 조 (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는 청구에 의하여 시가 시행하거나 또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행하고 그 공사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는 정액제로 하며 공사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공사비를 납부한다.

③ 전 각항의 급수공사중 급수용구는 기부체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되 관리의 책임은 관리인이 진다.

제14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원서에 관계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시장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② 대행업자의 선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15조 (관말 전말의 특별장치)

급수 관말 또는 전말에 특별장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급수공사 수수료)

①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선공사의 관공서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수수료는 공사완료후 청산하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1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급수공사 설계 및 재료검사)

①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설계는 시에서 시행한다.

② 전항의 설계검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전항의 수수료는 공사청구의 취소가 있을 때라도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급수공사의 준공)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급수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5조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도 전 제 1 항 및 제 2 항을 준용한다.

제19조 (급수공사의 하자)

시 또는 대행업자가 시행한 급수공사가 준공후 1년 이내에 급수용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급수공사로 인한 손해)

① 시에서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용구의 파손, 누수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21조 (도로공사로 인한 급수공사)

① 도로공사 기타의 사유로 급수용구의 위치변경 또는 수선이 필요할 때에는 관리자의 청구가 없

더라도 시에서 필요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공사의 원인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 (급수용구의 개수명령)

① 급수용구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급수용구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체 없이 그 상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수용구를 조사하여 개수명령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전 각항의 개수비용은 시비로 한다.

제22조의 1 (시설부담금)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부담금을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 공공수도는 예외로 한다.

제 3 장 급 수

제23조 (급수 계량)

급수는 양수기로써 계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결정한 바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24조 (양수기 장치)

① 양수기는 급수공사 시행과 동시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 양수기대금 및 장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급수 사용자의 형편으로 양수기 위치의 변경을 요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양수기의 수선은 시비로서 부담한다. 다만, 양수기를 망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에는 양수기의 재장치비(양수기 대금 포함) 또는 수선비를 징수한다.

④ 기설 급수전에 양수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장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전항 단서에 의한 양수기 대금 및 장치비는 일시에 전액을 불입하여야 한다.

⑥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수기를 대여할 수 있다.

⑦ 전항에 의한 양수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⑧ 전 5 항에 의한 양수기의 사용료 및 장치비가 완납되었을 때에는 시 소유로 한다. (기부 체납에 의한다)

제25조 (양수기의 시험청구)

- ① 양수기 사용자는 양수기에 고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시가 양수기의 성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성능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전 각항의 시험에 의하여 양수기의 회전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급수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26 조 (양수기 관리)

급수용구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양수기의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재, 공작물의 설치 및 양수기 매몰과 오물등을 방기할 수 없으며 양수기의 성능을 저해하는 여하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 27 조 (급수표지)

- ① 급수용구 관리자에게는 급수표지(급수장)을 교부한다.
- ② 전항의 급수전표지는 급수전 소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③ 급수표지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 28 조 (급수의 중지 및 폐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할 수 있다.

1. 급수사용자 등이 2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제 4조 제 3 항에 의한 급수정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고 3월 경과하고도 개전하지 아니한 때.
3. 제 32조 제 3 항에 의한 정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정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멸실되었을 때.

제 29 조 (소화용 급수사용)

- ① 사설 소화용급수를 소화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설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전항에 의한 사용기간은 1전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있다.

제 30 조 (시설변경 명령)

① 급수공사후 수도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수도사용량 계량에 시장이 있을 때 또는 급수관의 구경이 불리할 때에는 시장은 적당한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지역내에 수도사용자의 급수시설이 2개이상 있을 때에는 수도 사용량에 적합한 급수시설 1개로 통합을 명할 수 있다.
- ③ 송배수관의 증설, 개량공사 및 급수계획상 기설 급수시설의 이설 및 개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및 전항의 공사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제 4 장 사용료 및 수수료

제 31 조 (사용료)

-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급수용구 관리자 및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에 있어서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 32 조 (요율)

- ① 수도사용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징수한다.
- ② 전항의 요금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급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사한 급수의 요율을 준용한다.
- ③ 제 1 항의 기본요금은 급수 사용자로부터 급수 사용 정지 신청이 없는 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급수를 정지 혹은 단수 조치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3 조 (사용료 계산방법)

- ①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양수기 2개 이상을 장치하였을 때에는 양수기 매개에 대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 ② 1개의 양수기에 의하여 2호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또는 사설 공동급수의 사용량은 매호 균등히 사용한 것으로 한다.
- ③ 월 중도에 급수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료를 계산한다.
- ④ 1개의 양수기에 의하여 요율의 차이가 있는 급수를 병용할 때는 기본량은 업종별로 각각 계산하고 합계하되 월 사용량(조정량을 말함) 50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월 500톤 미만 사용하는 급수전이 요율의 차이가 있는 급수를 병용할 때에는 최고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양수기를 장치하여 따로 계산할 수 있다.
- ⑤ 한 개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수전과 2개 이상의 업종이 있을 때 수전별 사용시설이 완전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전수전에 최고율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월 조정량의 합계가 500톤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⑥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1월 미만인 신설, 폐전, 개전, 수전에는 일활 계산한다.

제34조 (양수기 겸겸)

① 양수기의 겸겸은 매월 1회 이상하되 그 사용량은 매일 평균 사용한 것으로 한다.

② 가정용에 대해 써는 2월 또는 3월마다 겸겸할 수 있다.

③ 양수기에 이상이 있는 기간의 사용량은 따로 인정 계량한다.

제35조 (사용료 납기)

① 수도사용료는 매 1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이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② 일시 사용급수 및 급수를 중지 또는 폐지할 때의 사용료는 수시 이를 징수한다.

③ 수도 사용료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납기 경과후 90일 이내에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90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전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 납기 경과후 180일 이내에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80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제 3 항, 제 4 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36조 (급수용수 손료)

①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용구 손료를 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매월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급수용구 손료는 월별로 하되 별표 3에 의한다.

제37조 (선용료 선납)

① 신규 수도 사용료에 대하여는 급수 개시전에 기본요금의 1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도 사용료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제 6 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대여할 때에는 2월분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선납금으로 급수를 폐지한 때에는 청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38조 (제수수료)

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1. 제17조 제 2 항에 의한 설계 수수료는 1공사에 대하여 설계금 액 50,000원까지 500원 다만, 50,000원을 초과할 때는 매 50,000원마다 250원을 가산한다.

2. 재료검사 수수료는 수검류, 와사판류 또는 기타 부속품 1개에 대하여 각 5원.

3. 제18조 제 2 항에 의한 준공검사의 수수료는 1공사에 대하여 설계금액 50,000원 까지 200원 다만, 5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매 50,000원마다 100원을 가산한다.

4. 제18조 제 3 항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1공사에 대하여 200원.

5. 제41조 제 1 항에 의한 정지처분 해제 수수료는 1전 1회에 대하여 가정용은 650원, 기타는 1,200 원

제39조 (양수기 사용료)

① 제24조 제 5 항에 의하여 대여한 양수기에 대하여는 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제40조 (급수공사비 및 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공사비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선사업을 위한 일시 급수
2. 공공의 필요를 위한 일시 급수
3. 전 각호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 5 장 위반처분

제41조 (급수정지 및 취소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급수공사비 및 수도사용료 급수용구 사용료 기타의 요금을 체납한 자.
2. 급수를 도용 남용 또는 시장의 허가없이 판매 분여한 자.
3. 임의로 급수용구를 사설, 이전변경 개조, 증설수선 또는 체손하거나 정수전을 개전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5조의 특별 장치를 하거나 또는 특별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방해한 자.
6.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수속을 태만히 한 자.
7. 양수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기타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8. 급수용구를 체손 또는 분실한 자.
9. 제18조 제 1 항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를 사용하거나 시장의 허가없이 연습용으로 사설 소화용급수를 사용한 자.
- 10..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1. 제27조 제2항의 급수표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2. 제13조 제2항 제22조 제2항 및 제30조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2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장치를 거부하는 자.
 14. 양수기를 분실 또는 고의로 매몰한 자.
 15. 허위 신고를 한 자.
- ②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용구 및 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제41조의1 (부정수도 정보제공자 보상지급)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를 면탈한 자를 제보한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수도임을 조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명이나 허위주소등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2. 보상금은 당해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 한다.
3. 보상금 지급기준은 부산시 제안조례 및 부산시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제42조 (벌칙)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4호에 따라 과태료와 추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료 포탈이나 부정 급수에 대하여는 구경, 급수시간, 수압에 의한 급수량을 유량 계산하여 이를 사용량으로 한다.

제43조 (체납처분)

수도사용료 및 급수장치 공사비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4조 (이의신립)

- ① 사용료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조례) 조례 제1호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시행한 제1호 부산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197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온천 급탕조례

제1조 (급탕구역)

온천급탕구역은 동래지구와 해운대 지구로 한다.

제2조 (급탕종류)

① 급탕종류는 다음 3종으로 한다.

1. 영업용급탕, 여인숙, 여관, 호텔, 요식업소 등에 대한 급탕.
2. 자가용급탕, 비영업용으로 일반 가정에 대한 급탕.
3. 욕탕 전용급탕, 공중공동욕탕에 대한 급탕.

② 급탕 종류는 시장의 허가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3조 (사용료)

급탕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 급탕 요금표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4조 (준용)

온천급탕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1. (전용) 이 온천사업의 회계는 부산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에 의한다.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 이 조례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제1호 부산시 온천급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한 조례 제1호 부산시 온천급탕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급탕요금표

급탕종류	월 기 본 초 과 요 금			비고
	탕 수 량	요 금	(1m ³ 당)	
영업용	300m ²	18,000원	100원	
자가용	15 "	1,500 "	120 "	
급탕전용	1,000 "	33,500 "	50 "	